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72호

2023. 3. 1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2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441호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
-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23-22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삼척시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 11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3-2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길 45-27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 공고 제2023 - 441호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삼척시장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의 확산을 통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금주구역의 지정 등(안 제3조)
- 다.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 라. 시민의 참여(안 제5조)
- 마.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6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3. 14. ~ 4. 3.(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 : 033-570-4696
- FAX : 033-570-4167
- E-mail : quesera1988@korea.kr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서 1부. 끝.

삼척시 공고 제2023 - 441호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삼척시 장

1. 의결주문

-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의 확산을 통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금주구역의 지정 등(안 제3조)
- 다.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 라. 시민의 참여(안 제5조)
- 마.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6조)

삼척시 조례(규칙) 제 호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 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단체 등은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된 금주·절주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서

- ▣ 조 례 명: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의견제출자: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보건소 공고 제2023-22호

- 삼척시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및 PACS 구입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삼척시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및 PAC 구입」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규격 및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삼척시장

1. 모집 개요

- 가. 모집기간: 2023. 3. 21. ~ 2023. 3. 28.
- 나. 모집분야: 방사선·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 다. 모집인원: 예비위원 21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3배수)
- 라. 역할: 제안서 규격·기술 능력 평가
- 마. 접수처: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보건소 3층)
- 바.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우편, 방문, 이메일(yidan@korea.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우편 접수처 :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보건행정팀
- ※ 공문 및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2. 자격조건

- 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임직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연구원

- 다.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라.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마. 해당 분야 전문기관·시민단체·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바. 그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자격제외자

- 가.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우
-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가.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서식1)
- 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2)
- 다.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1부(서식3)
- 라. 자격증명서류(기관·단체 소속 외)
 -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
 -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

5. 구입 개요

- 가. 구입장비: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및 PACS 1식
- 나. 구입예산: 금100,000천원
- 다. 구입방법: 조달 입찰(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라. 설치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설치장소: 삼척시보건소 영상의학실

6. 평가위원 선정

- 가. 선정일시: 2023. 4. 3.(월) 이후
- 나. 선정인원: 7명 (위원장 포함)
- 다. 선정방법
 - 1) 제안 참여자(제안 업체)가 7명씩 추천
 - 2) 선정순서: ①예비후보자 명부(고유번호)작성 ②다빈도 ③연장자 순
 -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다빈도 순으로 선 순위자 불참 시 차 순위자 선정
- 라. 선정결과: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단,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7. 평가실시

- 가. 일 시: 2023. 4. 10.(월) 14:00 (변동시 개별 통보)
- 나. 장 소: 삼척시보건소 3층 회의실
 -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
- 다. 내 용: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평가

8. 기타사항

- 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봅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라.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33-570-46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학력사항	e-mail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				
기 타 사 항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역 기재				

* 경력사항에 업체근무 경력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3. . .

작성자 :

(인)

삼척시장 귀하

[서식 3]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본인은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안성시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및 PACS 구입」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평가와 관련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가.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나. 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겠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입 평가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와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6.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위 서약자 소 속 :

생년월일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